

□ **우대사항 적용기준(채용공고일(2025.10.14.) 기준 유효한 경우 적용)**

-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00점 만점 중 최대 10점 이내 가점 부여
-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에 대하여 적용
 - * 우대사항 적용 전 취득점수가 각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(과락)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(가점) 미적용(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용)
 - *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중복 가산하되, 최대 10점 이내로 인정
- 우대사항 입사지원 시 지원자별 해당 내용만 기재하고, 검증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(예비합격자 포함)에 한하여 제출
-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누락, 미제출 등으로 적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증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

< 우대사항 >

구분	우대사항	검증방법	우대가점 (100점 만점 기준)	
			서류	면접
1	취업지원대상자	▶ 대상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▶ 증빙서류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▶ 적용 :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* 모집단위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미적용하며,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*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	5~10점	5~10점
2	장애인	▶ 대상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(본인) ▶ 증빙서류 : 장애인 증명서	5점	5점

3	저소득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▶증빙서류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	3점	-
4	한부모 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대상 :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가족보호대상자 ▶증빙서류 : 한부모가족 증명서 	3점	-
5	경력단절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대상 :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에 따라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 또는 가족돌봄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여성 ▶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▶적용 : 공고일(2025.10.14.) 기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,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(무직)에 한하여 적용 	3점	-
6	북한이탈주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대상 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▶증빙서류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	3점	-
7	비수도권 지역인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대상 :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▶증빙서류 : 재학증명서, 학위증명서, 졸업(예정)증명서 ▶적용 :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·해외(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)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 	2점	-
8	한국사능력 2급 이상 보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대상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▶증빙서류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▶적용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합격등급, 인증번호 확인 	1점	-
9	자립준비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대상 :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▶증빙서류 : 보호종료확인서 	1점	-